

읽어주는 평생친구, 보건복지부

**보 건 복 지 부**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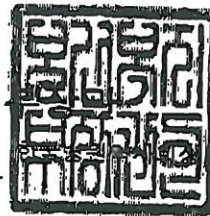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.12.29.부로 공포(시행일: 2016.12.30.)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속 회원(사)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460호) 1부. 끝.

**보건복지**

수신자 대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
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, 한국약품유통협회장

대한병원협회장, 한국제약협회장



약무시무관 유대규 약무정책과장 전결 2016. 12. 29.

협조자

시행 약무정책과-8787

(2016. 12. 29.)

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10동 보건복지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86 팩스번호 044-202-3927 / pharm93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